

의안번호	제491호
의결 연월일	2013년 6월 일 (제 321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3년 6월 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1
----------	-----

제출연월일 : 2013년 6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안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필요인력과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소방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3,085명 → 3,118명(+33명) (안 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517명 → 1,527명 (+10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456명 → 1,479명 (+23명)
-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내역 (별표 3)
 - 일반직 10명 증원 : (4급 +1명, 5급이하 +9명)
 - 소방직 23명 증원 : (소방령이하 +23명)

3. 의안전문 : 불 입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입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6. 비용추계서 : 불 입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85”를 “3,118”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17”을 “1,527”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456”을 “1,479”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출 장 소
총계	3,118	-				
정무직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계	1,223	-				
1~2급	1					1
2~3급	1		1			
3급	11	9		1		1
3~4급	2	2				
4급	66	41	7	5	7	6
5급이하소계	1,142	-				
별정직계	20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19	-				
연구직계	143	-				
연구관	23	1		20	2	
연구사	120	-				
지도직계	24	-				
지도관	6			6		
지도사	18	-				
소방직계	1,479	-				
소방정	12	3		9		
소방령이하	1,467	-				
교육공무원계	42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1	-				
기능직계	186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8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관의 정원 : 1,517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456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2명 4. 의회사무처의 정원 : 70명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11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관의 정원 : 1,527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479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2명 4. 의회사무처의 정원 : 70명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분 청</th> <th>의 회</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출 장 소</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3,08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1,213</td> <td colspan="5">-</td> </tr> <tr> <td>1~2급</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2~3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1</td> <td>9</td> <td></td> <td>1</td> <td></td> <td>1</td> </tr> <tr> <td>3~4급</td> <td>2</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65</td> <td>40</td> <td>7</td> <td>5</td> <td>7</td> <td>6</td> </tr> <tr> <td>5급이하소계</td> <td>1,133</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방직계</td> <td>1,456</td> <td colspan="5"></td> </tr> <tr> <td>소방정</td> <td>12</td> <td>3</td> <td></td> <td>9</td> <td></td> <td></td> </tr> <tr> <td>소방령이하</td> <td>1,444</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분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 소	출 장 소	총 계	3,085						∴	∴						일반직계	1,213	-					1~2급	1					1	2~3급	1		1				3급	11	9		1		1	3~4급	2	2					4급	65	40	7	5	7	6	5급이하소계	1,133	-					∴	∴						소방직계	1,456						소방정	12	3		9			소방령이하	1,444	-					∴	∴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분 청</th> <th>의 회</th> <th>직속 기관</th> <th>사업 소</th> <th>출 장 소</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3,11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계</td> <td>1,223</td> <td colspan="5">-</td> </tr> <tr> <td>1~2급</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2~3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1</td> <td>9</td> <td></td> <td>1</td> <td></td> <td>1</td> </tr> <tr> <td>3~4급</td> <td>2</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66</td> <td>41</td> <td>7</td> <td>5</td> <td>7</td> <td>6</td> </tr> <tr> <td>5급이하소계</td> <td>1,142</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방직계</td> <td>1,479</td> <td colspan="5"></td> </tr> <tr> <td>소방정</td> <td>12</td> <td>3</td> <td></td> <td>9</td> <td></td> <td></td> </tr> <tr> <td>소방령이하</td> <td>1,467</td> <td colspan="5"></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분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 소	출 장 소	총 계	3,118						∴	∴						일반직계	1,223	-					1~2급	1					1	2~3급	1		1				3급	11	9		1		1	3~4급	2	2					4급	66	41	7	5	7	6	5급이하소계	1,142	-					∴	∴						소방직계	1,479						소방정	12	3		9			소방령이하	1,467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분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 소	출 장 소																																																																																																																																																																																																													
총 계	3,085																																																																																																																																																																																																																		
∴	∴																																																																																																																																																																																																																		
일반직계	1,213	-																																																																																																																																																																																																																	
1~2급	1					1																																																																																																																																																																																																													
2~3급	1		1																																																																																																																																																																																																																
3급	11	9		1		1																																																																																																																																																																																																													
3~4급	2	2																																																																																																																																																																																																																	
4급	65	40	7	5	7	6																																																																																																																																																																																																													
5급이하소계	1,133	-																																																																																																																																																																																																																	
∴	∴																																																																																																																																																																																																																		
소방직계	1,456																																																																																																																																																																																																																		
소방정	12	3		9																																																																																																																																																																																																															
소방령이하	1,444	-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분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 소	출 장 소																																																																																																																																																																																																													
총 계	3,118																																																																																																																																																																																																																		
∴	∴																																																																																																																																																																																																																		
일반직계	1,223	-																																																																																																																																																																																																																	
1~2급	1					1																																																																																																																																																																																																													
2~3급	1		1																																																																																																																																																																																																																
3급	11	9		1		1																																																																																																																																																																																																													
3~4급	2	2																																																																																																																																																																																																																	
4급	66	41	7	5	7	6																																																																																																																																																																																																													
5급이하소계	1,142	-																																																																																																																																																																																																																	
∴	∴																																																																																																																																																																																																																		
소방직계	1,479																																																																																																																																																																																																																		
소방정	12	3		9																																																																																																																																																																																																															
소방령이하	1,467																																																																																																																																																																																																																		
∴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인건비용 추계서

○ 정원 변동내역 : 총정원 3,085명 ⇒ 3,118명 (증33명)

- 일반직 +10명, 소방직 +23명

○ 추가 소요 비용 : 1,824,169,337원

(단위 : 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비 고
총 계	1,824,169,337	
○ 인건비	1,426,068,367	
- 기본급	1,008,730,800	
- 수 당	277,323,488	
- 정액급식비	50,700,000	
- 교통보조비	13,500,000	
- 명절휴가비	51,302,760	
- 연가보상비	24,511,319	
○ 물건비	58,530,000	
- 직급보조비	58,530,000	
○ 이전경비	339,570,970	
- 성과상여금	77,676,970	
- 연금부담금	95,003,000	
- 보전금	97,809,000	
- 퇴직수당부담금	31,646,000	
- 국민건강보험금	37,436,000	